

# 2022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운영계획

- 유기·유실동물 입양 활성화를 통해 유기·유실동물 보호여건 개선
- 동물 보호·복지수준 향상

## □ 추진방향

- 동물보호·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따른 유기·유실동물의 새주인 찾아주기 등 인도적 입양 활성화 유도

## □ 근거법령

- 동물보호법 제4조(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
-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14조(유기동물 보호업무의 지원)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22. 1. ~ 2022. 12.
- 사업량: 162마리
- 사업비: 67,500천 원(보조 60%, 자담 40%)

구분	사업량	사업비(천원)					비고
		계	국비	도비	군비	자담	
합 계	270두	67,500	5,250	1,575	33,675	27,000	
유기·유실동물 입양비용 지원	70두	17,500	5,250	1,575	3,675	7,000	
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	200두	50,000			30,000	20,000	자체

- 지원대상: 유기·유실동물\*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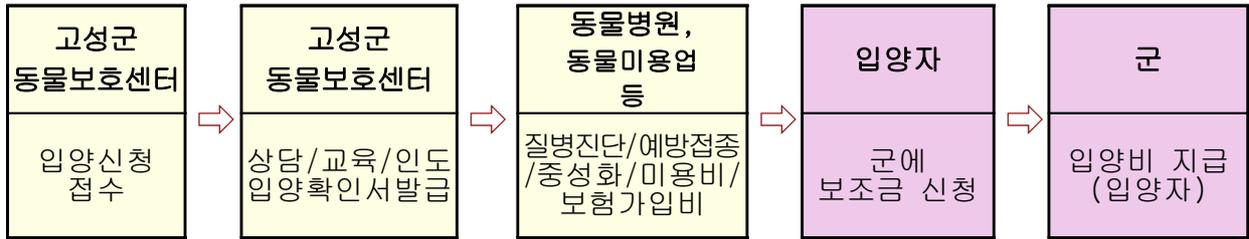
\* 「동물보호법」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

\*\* 「동물보호법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·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,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 가능(동물보호 법인·단체 지원대상 아님)

- 지원내용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보험가입비
- 보조금 지원한도액: 입양 1마리당 최대 150,000원 (보조 60%, 자담 40%)
- 지원신청기한: 입양 후 6개월 이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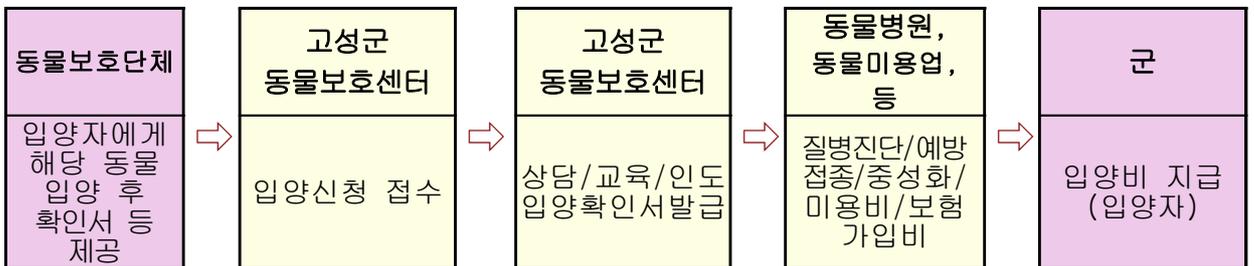
## □ 추진계획

◆ **입양자가 보조금 수령** ⇨ 입양자가 군에 직접 신청



◆ **동물보호단체를 거쳐 입양자가 보조금 수령** ⇨ 단체가 기증받은 동물을 입양자가 입양한 경우

\* 법인·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이 단체로부터 입양한 경우, 입양자가 입양비 신청 가능(단체가 센터로부터 분양·기증받은 날부터 6개월이내, 이 경우 단체는 입양자에게 센터로부터 받은 '입양확인서'를 입양자에게 제공 필요)



※ 진료 후 입양되는 동물에 한해서 입양계 진료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양확인서(붙임1) 또는 개체관리카드(붙임4) 제공

※ 입양자가 타 지자체에 거주할 경우, 동물보호(입양)센터 관할 지자체에서 입양비 지원

※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인지 확인(입양확인서, 동물등록, 통장명의자 등)하고, APMS에서 동일주소지내 동물등록을 확인하여 타 센터에서의 입양실적 등 확인

## □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

### ○ 보조금 환수
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·제33조의2에 따라 환수 및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과금 부과